##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814 발의연월일: 2022. 6. 7.

발 의 자:김회재·강민정·김수흥

민홍철 • 서동용 • 양정숙

양향자 · 이성만 · 이형석

한준호 · 홍성국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 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에는 그 통행료 외에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 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하려는 운전자 외에 기기 오작동이나 실수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까지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에는 부과된 통행료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그 통행료 외에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 행료의 3배의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과도한 부가통 행료를 부과 받은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가통행료의 이의신청을 통한 감면 절차를 규정하여 미납 통행료의 부과 수납제도의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의2 신설).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에는 부과된 통행료의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그 통행료 외에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附加通行料)를 부과·수납할 수 있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에 대한 감면 등) ① 제20조에 따른 부가통행료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고 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 로관리권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제1항의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가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②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
	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
	를 통행한 자가 사소한 부주의
	나 오류 등 과실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에는 부과된 통행료의 납부
	를 회피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그 통행
	료 외에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
	받은 통행료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
	료(附加通行料)를 부과·수납할
	<u>수 있다.</u>
<u>②</u> · <u>③</u> (생 략)	<u>③</u> ・ <u>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u>&lt;신 설&gt;</u>	제20조의2(부가통행료의 부과·수
	<u>납에 대한 감면 등) ① 제20조</u>
	에 따른 부가통행료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고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유료도

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 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 도로관리권자는 제1항의 이의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 정될 때에는 부가통행료를 감 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한다.